제245회 정 례 회
2005. 11 22(화)

검 토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
□ 2005년 11월 11일 이대원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, **「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」**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**제정이유**는

○ 남녀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『여성발전기본법』 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

□ **주요 내용**은,

○ 동 조례안은 본문 4장 40조, 부칙 3조로 규정되어 있으며

○ 제1장은 총칙으로 동 조례안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도 및 도민의 책무 적극적인 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

○ 제2장은 여성정책으로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, 주요정책 추진실적의

평가,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, 여성주간행사와 정책결정과정 도정참여 확대,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, 성차별 개선, 여성단체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

○ 제3장은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 및 임기,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○ 제4장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의 설치, 조성,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부칙으로 시행일 및 『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』의 폐지와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
□ 다음으로 **검토결과**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『여성발전기본법』 등에서 위임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있는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해야 할 여성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「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